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12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백혜련 · 부승찬 · 남인순

민홍철 · 이강일 · 이수진

서영석 · 최혁진 · 민형배

염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등 낮은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음주·성희롱·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한 징계 기준이 정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징계의 수위 자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정직은 1개월”을 “정직은 3개월”로, “3개월 이하의”를 “1년 이하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0조(징계의 효력) ①·② (생략)	제80조(징계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직은 <u>1개월 이상 3개월 이하</u> 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정직은 <u>3개월-----1년 이하</u> 의----- ----- -----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